

학생포상및징계에관한규정

1996.10.01.제정	1997.06.12.일부개정	2001.03.01.일부개정	2004.08.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8.04.03.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3.12.01.일부개정			

<학생·장학봉사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1조, 제52조에 규정된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

제2장 포 상

제 2 조 (포상의 대상) 포상은 본 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장학포상 이외에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①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생
- ② 타 학생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③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 ④ 지도교수나 학(과)장, 사회 각 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제 3 조 (포상대상자선발) ① 학생처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각 1부씩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2012.8.1.)

- 1.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 2. 지도교수추천서(학장 경유)(별지 제2호 서식)
- 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선발하고 총장의 결재로 최종 결정한다.

제 4 조 (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징 계

제 5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체적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1.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2. 시험 중 감독자의 지시불응, 답안지 혹은 자료의 수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한 자
3.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4. 타 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5.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되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자
6. 고의로 학교기물을 파괴하거나 학교질서를 문란케 한 자
7. 학칙,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자
8.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되어 학생상담센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청한 자

제 7 조 (징계절차) ①학생이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1.4.18, 2012.8.1.)

1. 학생징계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
2. 사건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
3. 본인의 진술서(제출 거부시 생략할 수 있음)
4. 지도교수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②학생지도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③징계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지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도교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3.1.)

④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총장이 결재함으로써 징계범위를 확정한다.(개정 2004.3.1.)

⑤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중부정행위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증거자료 포함)를 제출하면,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심의 없이 시험중부정행위자징계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결재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 단, 제11조제3호의 근신기간은 7일로 하며, 해당과목 0점 처리, 제12조제8호의 유기정학 기간은 14일로 하며, 해당과목 0점 처리, 제13조제6호는 무기정학 외 그 고사기간 중의 전과목 성적을 0점 처리한다.

제 8 조 (징계에 따른 자격제한) 징계를 받은 자는 장학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1.)

제 9 조 (징계의 구분)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15일 이내, 유기정학은 30일 이내,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경고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04.3.1.)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나 면학질서를 저해한 행위가 경미한 자
2. 내지 7.(삭제 2004.3.1.)

제11조 (근신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수업태도가 불량한 자
2. 사회윤리규범에 어긋나거나 언행이 불량한 자
3. 시험 중 부정행위자(감독관의 지시 불응, 답안지 도용, 자료 준비 및 수수 등)
4. 고의로 학교기물을 훼손한 자
5. 교내공식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자
6. 교내에서 불법으로 취사 또는 숙식행위를 한 자
7. 교내에 무단으로 야간에 잔류하여 근무자의 지도에 불응한 자
8. 기타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9. 교내에서 음주상태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자

제12조 (유기정학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8.04.03.)

1. 전조(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하였거나 그 행위가 중한 자
2.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3. 학교 단체행사시 질서를 파괴한 자
4.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칙 및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5. 신고없이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교내환경을 더럽힌 자
6. 교내에서 도박성이 있는 놀이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교내외에서 타인을 성적으로 희롱한 자
8. 시험 중 부정행위자(시험지 교환, 대리시험의 청탁자 및 수탁자)
9.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10. 기타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여 교수나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자
11.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자
12. 학생자치기구의 간부 혹은 학생자치경비 관계자로서 100만원 이하의 학생자치경비를 유용한 자
13. 학생자치경비를 유용한 학생에게는 유용한 전액을 변상 조치한다.

제13조 (무기정학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4.3.1.,2018.04.03.)

1. 전조(제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하였거나 그 행위가 중한 자
2. 학우에게 집단으로 폭행한 자
3.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
4. 학교의 공식업무에 방해한 자
5. 집단으로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파괴한 자
6. 시험 중 부정 행위자(제1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7. 금품 및 물품을 갈취한 자

8. 학교의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자
9. 학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학내질서를 문란케한 자
10. 학생회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11. 교내에서 음주상태로 학교기물을 파괴하거나 학우에게 폭행을 한 자
12. 학생자치기구의 간부 혹은 학생자치경비 관계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학생자치경비를 유용한 자
13. 학생자치경비를 유용한 자에게는 유용한 전액을 변상 조치한다.
14. 타인에게 성적 모욕행위, 폭력행사자로 그 정도가 중한 자

제14조 (제적의 기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8.04.03.)

1. 전조(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하였거나 그 행위가 중한 자
2. 흉기를 사용하여 심한 상해를 가한 자
3. 학교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4. 교외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자
5. 재학 중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자
6. 학교의 공식적인 전산망을 파괴하거나, 불법 침입하여 학사행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
7. 타인에게 성적 모욕행위, 폭력행사자로 그 정도가 심히 중한 자

제15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특별지도 기간동안 학생권리가 정지된다. (개정 2004.3.1.)

1.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특별지도 및 교내 봉사활동을 받는다.
2. 근신 이하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제16조 (징계해제) ① 모든 징계는 해당 징계기간이 만료되면 해제된다. (개정 2004.3.1.)

② 무기정학중인 학생의 징계해제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지도한 결과에 따라 징계해제요청서를 소속대학 학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3.1.)

③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징계해제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3.1.)

제17조 (통보) 학생처장은 징계결과를 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제18조 (기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실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사 건 경 위 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보 호 자	
주 소		전 화	
사 건 내 용			
위와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 귀하			

